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3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3. 22.(목)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정병락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정종윤 사무관(044-203-5881)

무역위원회,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 3. 22.(목)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인 감시·적발을 위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19개소를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

○ 또한, 아디다스코리아(유)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주)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 정종윤 사무관(☎044-203-58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사개시 결정 사건 개요

1 유리거울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

□ **조사신청 개요**(제보일: '18.1.24.)

○ (제보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 (혐의자) 개인사업자 A

○ (조사대상물품) 유리거울

○ (제보내용) 혐의자 A가 원산지 미표시된 유리거울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 혐의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유리거울을 구입하여 살펴본 결과, 현품에 원산지가 미표시된 사실을 확인
- 해당 유리거울의 반사율 측정한 결과, 반사율이 90% 이하로 중국산 거울로 추정됨

* 국산 은(銀)거울 반사율 : 90~95%, 중국산 알루미늄거울의 반사율 : 80~83%

□ **향후계획**

○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조사개시 후 100일 이내 판정, 위반 판정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2 레깅스 상표권 침해 조사

□ **조사신청 개요**(신청일: '18.1.26.)

○ (신청인) 아디다스코리아(유)

○ (피신청인) 개인사업자 B

○ (조사대상물품) 레깅스(WINTER TIGHT)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 물품 963개를 베트남에서 수입

- 인천세관은 피신청인의 낮은 수입신고가격(개당 2달러)이 의심스러워 신청인에게 신고사실을 통보
- 신청인은 감정결과 가품임을 확인하고 무역위 조사신청을 근거로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 현재 통관이 보류된 상태

*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가 법원 제소 외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시에도 가능('17.3.27. 시행)

□ **향후계획**

○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조사개시 후 100일 이내 판정, 침해 판정시 폐기처분 명령 및 과징금 부과

3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조사

□ **조사개요**

○ (신청인) ㈜자이글

○ (피신청인) ㈜C사, ㈜D사

○ (조사대상물품) 적외선 가열 조리기(HS코드: 8516.60.9000)

○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음식물 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

□ **향후계획**

○ 서면·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판정, 침해판정시 수입·판매 중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